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76
----------	-------

발의연월일 : 2025. 7. 4.

발 의 자 : 김재섭 · 조지연 · 서천호

조경태 · 윤한홍 · 조승환

권영진 · 백종현 · 최수진

김기웅 · 유용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와 생태계 교란 등의 영향으로 특정 곤충의 대량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일부 곤충은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도시 내 대규모 출몰로 인해 시민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와 같이 비위해성 곤충의 경우에도 시각적 불쾌감, 도시 미관 훼손, 일상활동 제약, 정신적 고통 등을 유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있음. 서울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86%는 ‘이로운 곤충이라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해충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하였음.

이로 인해 지자체에 접수되는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수의 주민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생활환경의 심리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와 같은 비해충성 곤충에

대한 방제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방역 및 예산 집행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시민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심리적 불쾌감 또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위생해충 등의 방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해충 또는 주민에게 심리적 불쾌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이 대량 발생한 경우 해당 곤충의 확산 방지 및 방제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유지 및 정신적 위생 보호를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4조제7호 중 “제13호 및 제51조제1항”을 “제13호, 제51조제1항 및 제51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1조의2(위생해충 등의 방제)</u> ① <u>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위생해충 또는 주민에게 심리적 불쾌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이 대량 발생한 경우 해당 곤충의 확산 방지 및 방제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u> ② <u>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유지 및 정신적 위생 보호를 위한 홍보 ·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
제64조(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와 시 · 군 · 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	제64조(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와 시 · 군 · 구가 부담할 경비) -----

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 1. ~ 6. (생략) 7.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 제8호·제9호·제13호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에 드는 경비 8. ~ 11. (생략)	----- -----. 1. ~ 6. (현행과 같음) 7. ----- -----제13호, 제51조제1항 및 제51조의2제1항----- ----- ----- ----- 8. ~ 11. (현행과 같음)
--	---